

경영연구소 규정

제정 1991.2.1

개정 2005.9.2

개정 2015.6.26

개정 2015.8.17.

제 1 조 (명칭) 본 연구소는 서강대학교 산하 부설연구기관인 경영연구소(이하 '연구소'라 한다)라 칭하고 본교 내에 둔다. <개정 2005.9.2>

제 2 조 (목적) 본 연구소는 자유기업제도(자유기업주의), 기업환경, 경영전략, 기능 및 운영 분야 별 전략을 포함한 기업 및 그 활동을 분석하고 지원하기 위한 학문적 실증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기업계 발전 및 경영학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. <개정 2005.9.2>

제 3 조 (활동)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. <개정 2005.9.2>

1. 자체연구에 의한 연구서적 출간
2. 기업을 위한 연구사업, 컨설팅, 산업훈련
3. 산학협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세미나, 강연회 등의 개최
4. 경영학 및 기업경영 관계 자료의 수집 및 전파
5. 학술지인 "서강경영논총"의 정기적인 출간
6.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조사연구 및 연구용역의 수탁
7. 국내외 다른 연구기관과의 학술적 교류
8. 기타 필요한 사업의 수행

제 4 조 (산하기관) 본 연구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.<개정 2005.9.2, 2015.6.26, 2015.8.17.>

1. 행정실
2.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센터
3. 글로벌 브랜드 연구센터
4. 사회적기업 연구센터
5. 연기금 연구센터
6. Business Analytics 연구센터
7. IB 연구센터

제 5 조 (연구원 자격) 본 研究所의 研究員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교 "研究員 內規"에 의한다. <개정 2005.9.2>

제 6 조 (임원) 본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 <개정 2005.9.2>

1. 소장
2. 운영위원회 위원 약간명

제 7 조 (소장)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05.9.2>

제 8 조 (운영위원회) 본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위원회는 소장, 경영학부 학장 및 소장이 위촉한 경영대학 소속 전임교수로 구성된다. 소장은 매학기 최소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위원장이 된다. <개정 2005. 9. 2, 2015. 6.26>

제 9 조 (운영위원회 활동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 <개정 2005. 9. 2>

1.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(안)
3.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(안)
4.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

제 10 조 (재정) 본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05. 9. 2>

1. 본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
2. 정부 및 다른 기관의 수탁 연구비
3. 개인 및 단체의 기여금 <개정 2005. 9. 2>
4. 기타

제 11 조 (기타) 본 규정 및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본교 규정류관리규정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개정·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9. 2, 2015. 6.26>

부 칙

- ① 본 규정은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본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(1차).
- ③ 본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(2차).
- ④ 본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(2015.6.26.)
- ⑤ 본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(2015.8.17.)